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 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 3호(2005. 3. 2)
-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18호(2005. 7. 7)
-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0호(2006. 3.25)
-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5호(2007. 4. 6)
-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15호(2008. 4. 8)
-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51호(2008.10. 7)
-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44호(2009.10. 6)
-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15호(2010. 4. 5)
-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34호(2010.10. 8)
-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29호(2011.10.17)
-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11호(2013. 5. 3)
-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64호(2014. 11. 28)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과 그밖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사업”(이하 “수출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수출지원기관”이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명시된 기관 및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행중인 기관으로 중소기업청이 별도 공고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역수출지원기관”이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본사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수출지원기관의 지부, 지점, 지역본부 등을 말한다.
4. “우선 선정”이란 평가 없이 선정함을 의미한다.

제3조(지정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별표 1)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체
  2. 신청전년도 또는 신청년도의 내국신용장 수취액을 포함한 수출실적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미만인 업체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신청 또는 지정하여서는 안된다.
1. 신청전년도와 신청년도 내국신용장의 수취액을 포함한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내수기업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3. 휴·폐업중인 업체
  4. 대외무역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대표자인 업체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 ③ 중소기업청장은 신청 또는 지정자격 등에 대해 상기 ①, ②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또는 예외가 필요한 경우,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2회(반기별 1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내용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4.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5. 수출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제5조(사업안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지역내 중소기업의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간지 공고, 안내문 발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신청절차 등) ①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신규 지정 또는 재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 접수는 사업공고에 따라 인터넷으로 하고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으로 첨부서류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비한 자료는 실태조사자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신용정보조회 등) 센터장은 현장실태조사 실시 전후에 법인 또는 기업 대표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업체실태조사) ① 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신청업체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인 이상으로 업체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인원을 조정 할 수 있다.

1. 수출지원센터직원
2. 동 요령 제2조의 수출지원기관 및 지역수출지원기관에서 수출지원센터에 파견된 직원
3. 센터장이 지정하는 수출전문가

③ 이 경우 방문일자 등에 대해 미리 방문업체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조사내용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평가표 작성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재지정을 신청한 업체에 대한 신청서류 검토결과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현장실태 조사를 생략하고 재지정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업체명 변경
2. 대표자명 변경
3. 수출유망품목 변경
4. 주사업장 소재지 변경
5. 지정기간중 전년대비 당해년도의 수출증가율(증빙자료가 확인된 내국 신용장 수취액포함)이 매년 10% 미만인 경우

제9조(평가결과의 처리) 센터장은 지정업체 선정을 위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9조의2(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내 수출지원기관의 장 16명 이내로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국가재정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심의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심의 등) ① 협의회는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지원에 관한 사항, 센터장 또는 위원이 상정한 안건 및 그 밖의 지역중소기업수출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이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3일전까지 센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센터장이 상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안건에 대해 업체별로 심의하되, 그 지정여부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협의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등) ① 센터장은 동 요령 제10조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업체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시 수출지원기관의 우선 지원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명단과 업체별 지원요청사항을 각 수출지원기관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지정신청자중 동 요령 제3조에 의해 지정제외 대상업체 이거나 동 요령 제10조에 의해 지정대상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제외 또는 탈락사유를 명시하여 협의회 심의·의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문서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증빙자료가 확인된 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이 매년 30% 이상인 경우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동 요령 제11조에 의하여 센터장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수출지원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정기간 및 횟수) ①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지원은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횟수는 2회로 한다. 다만, 제11조 제5항의 경우에는 3회까지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장 등의 책무) ① 센터장은 성장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정단계에서부터 지원단계에 이르기까지 센터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은 센터장이 지원을 요청(추천 포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의 취소 등)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협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속임수에 의해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원기간 중 부도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센터장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2.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자산,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3.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시·도로 변경되었을 경우

③ 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취소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중소기업청 및 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수출실적 우수기업 포상) ① 센터장은 수출기업의 사기진작과 수출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수출시장 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출이 대폭적으로 신장된 기업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수출중소기업인상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센터장으로부터 추천된 기업의 수출실적 및 공적에 대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중소기업인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참여기업은 센터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 센터장은 지정증 발급 이후 2주 이내에 온라인상 선정 기업 정보 입력을 완료해야하며, 반기 1회 선정기업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 ② 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에 대해 지정 1년전부터 3년간 업체별 수출실적(증빙자료가 확인된 내국신용장 수취액포함)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 10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이 요령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③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해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기간 기산일은 종전 요령에 의해 지정 받은 날로 한다.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기업 일 반 현 황	기업명		한국표준산업분류 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e-mail			
			대표자 휴대전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설립년도		년 월 일	URL	http://www	
	주소	본사				
		공장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e-mail				
		전화번호		FAX		
	기 지정여부		지정일~만료일			
	무역업등록번호		수출업력		년	
	구분	전전년도(실적)	전년도(실적)	매출·수출신장율	신청년도(실적)	
	매출액(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수출액(천불)	천\$	천\$	%		
기술인증, 규격인증 및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1. 기술인증	2. 규격인증	3. 산업재산권			
상시근로자수	(신청 전년도말 명)		주 생산품목			
자본금(백만원)			주 수출품목			
혁신성 평가항목 보유현황	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 ), 경영혁신기업( ),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 녹색전문기업( ) 기타( ) * 해당란에 √표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						
구 비 서 류	<input type="checkbox"/> 수출이행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1부					
	<input type="checkbox"/> 전년도 및 신청연도의 수출실적증명서 1부.(현장확인)					

## 수출 이행 계획서

<b>1. 수출 현황</b>					
품 목	지역 (국가명)	실적 및 목표(천달러)			수출방법 (간접/직접)
		전년도	해당년도	차년도	
<b>2. 수출 여 건</b>					
무역전문인력 (명)	해외지사 또는 수출해외거점(곳)	수출지원사업 참여		기 타	
		여.부	참여사업명		
		있다, 없다			
*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사업 예) 수출기업화, 해외전시회파견,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중소기업글로벌브랜드육성, 인터넷중소기업관					
<b>3. 수출 전략</b>					
<input type="checkbox"/> 소요자금 조달					
<input type="checkbox"/> 해외마케팅 추진 및 수출전문인력 확보					
<input type="checkbox"/> 기술 및 품질경쟁력 확보					
<b>4. 이 용 계 획</b>					
지원기관명	우대지원내용	신청시기	이용기간	비 고	
* 수출지원센터 및 수출지원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히 작성					
<b>5. 기 타 의 견</b>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종합평가표 (제조업)

번호	업체명		신청일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역	평가점수	
수출신장유망성 (45)	수출실적	15			
	수출신장율	10			
	수출비중	5			
	품질·수출경쟁력	연관기술의 인증	5		
		국내외규격인증	5		
산업재산권(특허, 실용 신안, 의장등록)		5			
수출동행능력 (15)	수출계획관리실태	5			
	수출준비도	5			
	해외시장개척활동	5			
기술성 (15)	연구개발 조직·인력	5			
	연구개발비 투자	5			
	연구개발 실적 및 관리의 적합성	5			
재무평가 (20)	부채비율	5			
	유동비율	5			
	매출액증가율	5			
	매출액영업이익율	5			
혁신성 등 평가		5			
총 계		100			

실태조사결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 . . .

평가자 : (소속기관명)

(성명)

(서명)

(소속기관명)

(성명)

(서명)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종합평가표 (서비스업)

번 호	업체명	신청일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내역	평가점수
수출 신장 유망성	수출실적	15		
	수출 신장률	10		
	수출비중	10		
	소계	35		
수출 활동 수능 력	수출 준비도	5		
	품질·수출경쟁력	5		
	수출계획관리실태	5		
	소계	15		
서비스 제공 능력	전문인력의 비율	5		
	전문인력의 근속연수	5		
	전문인력의 훈련 및 교육 비용	5		
	고객정보 및 지식관리	5		
	서비스 차별성	5		
	소계	25		
재무 평가	부채비율	5		
	유동비율	5		
	매출액 증가율	5		
	매출액 영업이익률	5		
	소계	20		
혁신성 등 평가		5		
소계		5		
총 계		100		

실태조사결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 . . .

평가자 : (소속기관명)  
(소속기관명)

(성명)  
(성명)

(서명)  
(서명)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제 ○○지역명- 호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생산품목 :
- 주소 :
- 대표자 :

귀사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년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함

지정기간 : . . ~ . .

20 . . .

○○지방중소기업청장(수출지원센터장)

# CERTIFICATE

This is to certify that 회사이름 represented by 대표자 성명 has been designated as a Promising Export Firm by the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Certificate No : -

Certified Date :

Issue Date :

Expiry Date :

지방청장 성명 (서명)

Authorized Local Signatory

지역명 Export Center, SMBA

- \* 작성요령: 1. 회사이름과 Promising Export Firm은 진하게  
2. 회사이름, 대표자 및 지방청장 성명, 지역명은 영문으로 작성
- \* 참고 : Certificate No는 지정증 번호, Certified Date는 유효기간 시작일  
Issue Date는 지정증 발행일, Expiry Date는 유효기간 만료일

## 3년간 수출실적 현황

(단위 : 천달러, 백만원)

업체명	지정번호	수출실적		
		직전년도	지정년도	차기년도
○○○(주)		수출액 (총매출)	수출액 (총매출)	수출액 (총매출)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번호	해 당 업 종
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수출업에 한함)
47911	전자상거래업
493	도로화물 운송업
501	해상 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일반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 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4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565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